

[별표 4]

채점관 준수사항(제20조 관련)

1. 채점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본인이 채점관임을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2. 채점은 모범 답안에 의거 적색(싸인펜, 구리스펜) 필기구로 채점하여야 하며, 객관식 답안은 컴퓨터 리드기로 채점하여야 한다.
3. 채점은 오답만을 가려 사선으로 표시한다.
4. 채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답안은 무효로 한다.
 - 가. 컴퓨터 수성 싸인펜을 사용하지 않은 답안
 - 나. 표기한 해답을 긁거나 수정액 등으로 정정했을 때
 - 다. 해답을 2개 이상 표기했을 때
 - 라. "●"표 이외의 표기를 하여 컴퓨터가 판독하지 못할 때
 - 마. 답안지에 정답 이외의 이상한 표기를 한때
 - 바. 감독관 확인이 없는 답안
5. 채점이 완료되면 모범 답안과 채점 답안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즉시 인계한다.
6. 채점 후 누구에게도 득점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